

알제리 (Alger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18.25% / 7.5% / 11.25%	18.25% / 7.5% / 11.25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4,320,000 / 216,000 dinars	4,320,000 / 216,000 dinars	-
연금수급 개시연령	남성 60세, 여성 55세	남성 60세, 여성 5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5년	15년	-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 기준)	80%	80 ~ 100%	0~20%↑
일시금	월 소득의 2.5% × 납부연수	월 소득의 2.5% × 납부연수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49년
- 현행법 : 1983년(노령연금, 1984년 시행), 1983년(장애 및 유족, 1984년 시행), 1994년(조기연금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, 가사노동자·운전기사·관리인·간병인 등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, 퇴역군인, 특정부류의 어부 및 법정 최저임금 (18,000 dinars)의 1/2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견습생, 자영자
- 특별제도 : 군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소득의 7%(노령)
 - 장애 및 유족급여는 질병·출산보험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함(질병·출산 보험료 1.5%)
- 자영자 : 연간 신고소득의 7.5%
 - 보험료산정 연간 하한소득은 216,000 dinars, 상한소득은 4,320,000 dinars

- 사용자 : 월 소득의 11.25%(노령)
 - 장애 및 유족급여는 질병·출산보험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함(질병·출산 보험료 11.5%)
- 정부 : 최저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로서 기여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근로자
 - 보험료 납부기간 최소 7.5년을 포함하여 가입(납부 또는 크레딧) 기간이 15년 이상인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 및 퇴역군인) 도달자 ; 가입기간이 32년 이상인 59세 도달자;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완전 장애가 있는 근로자(연령제한 없음)
 -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직종 종사자는 수급연령이 낮아지며, 최소 9년 동안 자녀를 양육한 여성의 경우 자녀 1명당(최대 3명까지) 수급연령이 1년씩 낮아짐
 -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5년까지 계속근로 가능
 - 근로는 중단되어야 함
 - 배우자보조금 :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
 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50세(남성) 또는 45세(여성) 도달자. 가입자는 경제상황(인원감축, 폐업)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고, 과거 10년 중 3년 이상 동일사용자에게 고용되었어야하며, 어떠한 근로 활동으로부터도 수입이 없어야 함
 - 노령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 최소 5년 이상 15년 미만의 60세 도달자
 - 최소 180일 이상 근로하며 가입한 것을 1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
 - 질병·출산 또는 산재급여 수급 등의 특정 조건하에서는 가입기간 인정될 수 있음
 - 노령연금 및 일시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가능
 - 자영자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인 65세(남성) 또는 60세(여성) 도달자(퇴역군인 및 장애인은 납부기간 7.5년 필요)
 - 최소 9년간 자녀를 양육한 여성에게는 자녀 1명당(최대 3명까지) 1년씩 수급연령이 낮아지며, 장애가 있는 경우는 평가된 10개의 장애 등급마다 수급연령이 1년씩 낮아짐
 - 노령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 최소 5년 이상 15년 미만의 65세 도달자
 - 노령연금 및 일시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가능
- 장애연금
 - 근로자
 - 근로능력을 최소 50% 상실한 자로서 최종 12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또는 최종 3년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된 경우
 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

- 부분장애연금 : 근로능력을 10~50% 상실한 경우 지급
 -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 시, 장애연금은 정지되며 최소 같은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
 - 장애연금은 해외지급 불가
 - 자영자
 - 퇴직연령 이전인 자로서 근로능력을 완전히(100%) 상실하고, 장애를 판정받은 초진일 전까지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
 - 장애연금은 해외지급 불가
- 유족연금(근로자 및 자영자)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수급자이었거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 - 사망보조금
 - 근로자 : 사망 전 3개월 이내 최소 15일(또는 100시간) 이상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
 - 자영자 : 사망 전 최소 15일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
 - 유족범위 : 배우자(연령불문), 18세 미만의 자녀(법정 최저임금 18,000 dinars의 1/2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견습생인 경우 25세, 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아나 무소득 딸, 조카딸, 자매 또는 고모/이모는 연령제한 없음), 최저 노령연금 미만 소득의 부양 부모
 - 유족연금 및 사망보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가능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- 근로자
 - 퇴직 전 5년 또는 전체 근로 기간 중 가장 소득이 많았던 5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2.5%에 납부기간을 곱한 금액
 - 최저 연금월액 : 법정 최저임금의 75% 또는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80% 중 낮은 금액
 - 최대 연금월액 : 법정 최저임금의 15배
 - 법정 최저임금 : 월 18,000 dinars
 - 배우자보조금 : 월 2,500 dinars
 - 상시간병수당 : 노령연금액의 40%
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 급여를 수급하면, 매 1년당 1%씩 감액.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 매 1년당 1%씩 증액되며, 퇴직연령 도달 전 연금이 지급된 연수와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재산정. 조기연금은 가입자가 정상 퇴직연령 전에 퇴직하는 연수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함
 - 최저 조기연금월액은 법정 최저 임금의 75%
 - 급여조정 : 매년 5월 1일에 장관령에 따라 급여 조정
 - 노령일시금 : 퇴직 전 5년 또는 근로 기간 중 가장 소득이 많았던 5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 중 많은 금액의 2.5%에 납부기간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- 자영자
 - 근로기간 중 가장 소득이 많았던 10년 동안의 월 평균소득 2.5%에 납부기간을 곱한 금액
 - 최대 연금월액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10년 동안의 월 평균소득의 80%
 - 급여조정 : 매년 5월 1일에 장관령에 따라 급여 조정
 - 노령일시금 : 퇴직 전 5년 또는 근로 기간 중 가장 소득이 많았던 5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 중 많은 금액의 2.5%에 납부기간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연금

- 근로자
 - 최종년도 또는 총 근로기간 중 소득이 가장 많았던 3년 동안의 월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80%
 - 상시간병수당 : 연금의 40%
 - 부분장애연금 : 최종년도 또는 총 근로기간 중 소득이 가장 많았던 3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 중 많은 금액의 60%
 - 최저 연금월액 : 법정 최저임금의 75%
 - 법정 최저임금 : 월 18,000 dinars
 - 급여조정 : 매년 5월 1일에 장관령에 따라 급여 조정
- 자영자
 - 최종년도 연간 소득월액의 80% (45일 대기 기간 이후 지급)
 - 최저 연금월액 : 법정 최저임금의 75%
 - 최대 연금월액 : 법정 최저임금의 8배
 - 법정 최저임금 : 월 18,000 dinars
 - 급여조정 : 매년 5월 1일에 장관령에 따라 급여 조정

○ 유족연금(근로자 및 자영자)

- 배우자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75%(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 50%). 미망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균분 지급
- 기타 수급권이 있는 유족
 - 기타 유족이 1인인 경우는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30% 지급,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의 40%를 균분 지급
 -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고아에게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45%, 부모에게는 30% 지급
- 유족연금총액은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연금액의 90%를 초과 할 수 없음
- 급여조정 : 매년 5월 1일에 장관령에 따라 급여 조정
- 사망보조금 :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사망 전 최고 소득월액의 12배, 자영자의 경우 연간소득액을 지급하되 수급권이 있는 유족에게 균분 지급
- 최저 사망보조금 : 법정 최저임금의 12배 (비기여 가입자는 75%)

- 노동고용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, Employment, and Social Security)
 - 전반적 감독

- 국가퇴직기금(National Retirement Fund)
 - 근로자 노령보험제도의 관리운영 및 보험료 징수
 - <http://cnr.dz>

- 국가사회보험기금(National Social Insurance Fund)
 - 근로자 장애 및 유족보험제도 관리운영
 - <http://www.cnas.dz>

- 비 임금 소득자를 위한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for Nonwage Earners)
 - 자영자 노령 및 장애제도 관리운영 및 보험료 징수
 - <http://www.casnos.com.dz>

<2019년 ISSA 자료>